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83

발의연월일: 2021. 4. 19.

발 의 자:김경만·김홍걸·홍성국

신정훈 • 이규민 • 김수흥

이용빈 · 양기대 · 황운하

김정호 · 강선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함으로써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제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식품제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윤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 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 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 인사업자	108분의 8
	나. 가목 외에 제조업을 경 영하는 사업자로서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6분의 6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	액 공제특례) ①
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	
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	
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	
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	
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	
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	
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	
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u>구분</u>	<u>율</u>
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 영자	<u>102분의 2</u>
1. 음 나. 가목 외의 음식점 실 을 경영하는 사업 점 자 중 개인사업자 업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u>다. 가목 및 나목 외</u> <u>의 사업자</u>	106분의 6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 조업 중 떡방앗간 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	106분의 6
2 나. 가목 외의 제조업 필 경영하는 사업 조 중 「조세특례 제한법」제5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 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u>다. 가목 및 나목 외</u> <u>의 사업자</u>	<u>102분의 2</u>
<u> </u>	<u>102</u> 분의 2
②・③ (생 략)	

	<u>구분</u>	율_
1 음 식 점 업	가.「개별소비세 법」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 흥장소의 경영 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 식점을 경영하 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u>다. 가목 및 나목</u> <u>외의 사업자</u>	<u>106분의 6</u>
<u>2</u> . 제 조 업	가.제조업을 경영하는개인사업자	108분의 8
	나. 가목 외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중소기업	106분의 6
	<u>다. 가목 및 나목</u> <u>외의 사업자</u>	<u>102분의 2</u>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③ (현행과 같음)